

## ■ 최신 법령 ■

## [자본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채희석 변호사

## 1. 주요 내용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자본시장법')을 통하여 부동산펀드와 공매도 관련 제도에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부동산펀드의 경우 리츠(REITs)와 유사한 형태로 규제 내용이 조정되었고, 공매도의 경우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부동산펀드 및 공매도 관련 제도의 변경을 포함하여 이번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변경된 제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지정·변경하는 경우의 통보의무를 폐지함(제28조의2).
- 금융회사에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명시함(제63조의2).
- 투자회사의 부동산 투자비율 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최소투자비율 적용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며, 부동산 운영 목적의 금전차입을 허용함(제81조 제4항, 제94조 제1항, 제194조 제11항).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등을 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도록 하고, 임원 등의 보수는 분기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도록 함(제159조 제2항 및 제160조).
- 주식교환·주식이전·합병·분할·분할합병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그 사

실 발생일의 다음 날에서 그 사실 발생일부터 3일 이내로 연장함(제161조 제1항).

- 주권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이사는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65조의12 제9항).
-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를 법률상 의무로 격상하고, 보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제180조의2 및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 제39호의3).
-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매도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및 공매도 잔고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180조의3 및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4).

이번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인하여 부동산펀드의 활성화와 함께 공매도 관련 규제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다운로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